

의안번호	2211854
의 퇴 인	조지연 의원
회 답 일	2025. 8. 11.
추 계 번호	25C41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39조의15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 (제2항) 국가는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9조의15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요양보호사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장기요양기관(시설기관·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개별 기관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인건비에 영향을 미침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5호)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시설 및 제공 급여별로 48.5%부터 62.5% 수준까지 차등하여 설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목적으로 현재 요양보호사가 지급받는 평균 인건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을 통한 장기요양보험 수입 증가가 수반되며,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¹⁾에 따른 국가부담금이 증가하게 됨
 - 한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할지 여부와 그 규모를 알 수 없고, 국가가 설정할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수준도 알 수 없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후략)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